회계규정

제 정 1993.10.28 개 정 1999.06.29 개 정 2005.07.04 개 정 2010.04.07 개 정 2011.05.25 개 정 2012.10.05 개 정 2013.04.08 개 정 2014.09.17 개 정 2018.06.29 개 정 2018.08.22 개 정 2020.06.02 개 정 2022.09.23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가스기술공사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회계업무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① 회사의 회계업무는 다른 법령, 「공기업·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」및 「공기업·준정부기관 회계기준」(이하 "회계기준"이라 한다)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 <개정 2005.7.4, 2011.5.25, 2018.6.29>
 -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한국가스공사 그룹사 회계처리 지침서(이하 "그룹회계매뉴얼"이라 한다)에 따른다. <신설 2018.6.29>
- 제3조(회계연도) 회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- 제4조(회계단위) ① 회사의 회계단위는 총계정원장의 설치부서로 한다.
 - ② 각 회계단위의 회계를 총괄하기 위하여 본사에 총괄회계단위를 둔다.
- 제5조(회계관계직원) ① 회계단위별 회계담당책임자 및 회계담당직원(이하 "회계관계직원"이라한다)은 관계규정에 의하여 회계업무를 보직함으로써 회계관계직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.
 - ② 회계관계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 - 1. 회계, 출납, 자금 또는 계약업무를 관리하는 직제상 조직의 장(하부조직의 장 포함) <개정 2018.8.22, 2020.6.2>
 - 2. 제1호의 회계담당책임자를 보좌하여 회계,출납,자금 또는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<개정 2010.4.7.>
 - ③ 본사의 회계담당, 출납담당, 자금담당, 계약담당의 직무는 서로 겸직할 수 없으며, 지사의 경우 회계(출납)담당, 계약담당의 직무는 서로 겸직할 수 없고, 지사의 회계(출납)담당과 계약

담당의 직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속하여 3년 이상 수행할 수 없다. 다만, 해외사무소인 경우와 정원이 너무 적은 경우 등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.

<신설 2010.4.7, 개정 2018.6.29, 2020.6.2>

- ④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하여야하며,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신설 2018.6.29>
- ⑤ 회계관계직원의 재정 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, 회계관계직원의 재정 보증에 관한 사항은 「인사규정시행세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신설 2018.6.29.>
- ⑥ 회계관계직원의 업무전문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여 교육계획을 수립, 시행하여야 한다. <신설 2022.9.23>
- 제6조(계정과목) 본사의 회계담당부서장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재무제표 계정체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정과목을 설정·분류한다. <개정 2018.6.29>
- 제6조의 2(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) 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, 포괄손익계산서, 자본변동표, 현금흐름표 및 주석으로 한다. <신설 2018.6.29>
 - ②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6.29>
 - ③ 잉여금명세서 등 기타 필요한 명세서는 부속명세서로 작성하여 재무제표에 첨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6.29>
- 제6조의 3(회계서류의 보관 등) 회계서류의 보관, 열람, 보존, 편철, 대출 및 복사에 관하여는 문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신설 2018.6.29>
- 제7조(예규 등의 제정) 본사의 회계담당부서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예규 및 지침 등을 제정, 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1.5.25>

제 2 장 회계처리 및 장부

- 제8조(거래의 처리) ①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9.23>
- ② 전표라 함은 제1항의 모든 거래를 유형별로 기록 및 관리하기 위해 계정과목, 거래내용, 금액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서식을 말한다. <신설 2022.9.23>
- 제9조(전표의 작성) ① 전표는 거래의 발생시점 또는 실현시점에 집행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하며, 거래내역 등을 적요란에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9.23>
 - ② 집행부서는 전표의 결재를 득한 후 전산화된 형태의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계담당부서로 송부한다. <개정 2022.9.23>
 - ③ 회계담당부서는 집행부서에서 작성한 전표의 정확여부를 검토·확인하여야 한다.
 - ④ 회계담당부서는 회계처리가 완료 된 전표 및 관계증빙서류를 전산화된 형태로 관리할 수 있으며, 집행부서(전표작성부서)는 감독기관이나 이해관계자 등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증빙서류 원본을 문서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9.23>
- 제10조(회계장부) ①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한다.

- ② 주요부는 분개장과 총계정원장으로 하고 보조부는 각 계정원장 및 명세장으로 한다. <개정 2022.9.23>
- 제11조(중빙서류의 범위) 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써 그 범위는 제13조 각 호의 서류와 기성 및 준공검사보고서, 검수보고서, 자재입·출고증표, 여비산출명세서, 내역서 등 기타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. 다만, 품의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.
 -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지 아니한 증빙서류라 할지라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한다.
 - ③ 증빙서류의 부기증명을 요하는 사항은 관계증빙서류의 여백에 주기하고 작성자 성명을 기재후 서명한다. <개정 2022.9.23>
 - ④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. 다만,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, 원본 대조자가 이에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.
 - ⑤ 제1항의 증빙서류는 전자문서 형태로 첨부하여야 한다. <신설 2022.9.23>
 - ⑥ 기타 증빙서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<신설 2022.9.23>
- 제12조(중빙서류의 생략) ① 오기정정 또는 결산시 계정간 대체 등과 같이 단순히 계산적 조작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준거래에 있어서는 그 전표로써 증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전표의 적요란에 사유 및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.
 - ② 급여대장, 인부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에서 별도 보관 할 수 있다.
- 제13조(중빙서류의 작성)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 - 1. 지출결의서
 - 지출결의서에는 지급의 뜻, 공사명, 품명 및 수량, 산출내역, 부분급 내용과 지급회수, 선급금 및 개산급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.
 - 2. 영수증서
 - 가.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날인하거나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별지 영수증서에 기명날인한 것이어야 한다.
 - 나.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명하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송금증명은 "가"목에 의한 영수증서로 본다.
 - 다. <삭제 2005.7.4>
 - 라.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.
 - 단, 세법 등에 따라 영수증을 수취할 수 있는 경우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- <개정 2011.5.25, 2012.10.5>
 - 3. 청구서
 - 가.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.
 - 나. 청구서의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.
 - 4. 계약서
 - 가.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.

- 나.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.
- 제14조(지불증빙서류의 심사) ① 회계담당부서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를 징구하여야 하며,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심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6.2, 2022.9.23>
 - ② 증빙서류의 심사결과 지출행위를 함에 부적당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반려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의 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<신설 2022. 9.23>

제 3 장 자금회계

- 제15조(금전의 범위) ① 금전은 현금, 예금, 수표, 우편환증서를 말한다.
 - ② 당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어음과 기타 유가증권 등 제 증서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.
- 제16조(출납마감) 출납의 마감시간은 출납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2010.4.7> 제17조(금전의 보관) ① 금전 및 수표장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고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② 전도금의 지급잔액과 마감 후의 수입현금을 제외하고는 현금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. <개정 2018.6.29>
- 제17조의 2(금고의 관리) ① 금고는 지정된 출납구획 내에 설치하고 열쇠와 금고부호는 동일인에게 관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2005.7.4>
 - ② 금고열쇠의 분실, 도난 및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출납담당부서장(또는 지사장)에게 보고하고 금고의 부호를 변경하여야 한다.
 - <신설 2005.7.4, 개정 2011.5.25, 2020.6.2>
- 제18조(금전의 과부족처리) ① 금전의 부족을 발견했을 때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.
 - ② 제 1항의 가지급금 처리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취급자가 즉시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③ 금전의 과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.
 - ④ 제 3항의 가수금처리 후 3월이 경과하여도 그 내용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.
- 제19조(수표 및 어음행위) 수표 및 어음의 금액은 정정할 수 없으며, 수표 또는 어음행위는 사장의 명의로 행한다. 다만, 사장이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명의로 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8.6.29>
- 제20조(자금의 조달 및 운용) 자금의 조달 및 운용은 자금집행계획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21조(자금의 차입 등) 자금의 차입, 대여 및 지급보증행위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사장의 명의로 행한다. 다만, 예산총칙에 정한 차입금 등의 한도 내에서의 차입 등은 이사회의 결의를 득한 것으로 본다.
- 제22조(수입금의 관리) ① 지사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금은 본사에서 집중관리 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사에서 직접 수령하여 집행할 수 있는 수입금의 한도는 출납업무처리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사에서 수령하여 본사로 입금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1.5.25, 2012.10.5, 2013.4.8>

- 1. 전자적결재방식 등에 의한 수입
- 2.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사 출납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 <개정 2018.6.29, 2020.6.2>
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(하도급관리의 전자적 처리)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(하도급대금의 지급 등)에 따라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은 지사에서 직접 수령하여 집행할 수 있다. <신설 2013.4.8, 개정 2020.6.2>
- 제23조(금전지출) ① 지출은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명하는 자(채권자의 하도급자에 한함)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(이하 "채권자계좌입금" 이라 한다)하는 방법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1. 인건비ㆍ여비ㆍ전도금 및 회사 상용의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
 - 2. 1건 당 5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 <개정 2018.6.29>
 - 3. 대가를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
 - 4. 기타 채권자계좌입금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② 지출원인행위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계좌입금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고자할 때에는 소정의 계좌입금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받아야 한다.
 - ③ 지출원인행위담당자는 채권자계좌입금 방법으로 지출의뢰할 경우 전표작성시 입금계좌를 기재하여야 한다.
 - ④ 계좌입금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한다. 다만, 해외 송금시 현지은행 등의수수료는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4.9.17>
- 제24조(전도금) ① 업무의 성질상 전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금을 전도할 수 있다. <개정 2012.10.5>
 - ② 전도금을 교부할 때에는 전도금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가지급금으로 전표를 작성하여야 하며, 전도금사용계획서에는 전도금액, 전도지급사유, 전도금취급담당, 정산과목, 정산예정일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. <개정 2011.5.25, 2020.6.2>
 - ③ 출납담당부서에서 전도금을 교부할 때에는 전도금사용부서장(직제상 하부조직과 하부단위조직도 가능)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근거리지역에 금융기관이 없는경우와 업무 수행상 교부당일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교부할 수 있으며, 전도금을 사용할 거래처와 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.

<개정 2010.4.7, 2011.5.25. 2020.06.2>

- ④ 전도금은 당초의 사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전도 후 사용목적이 변경되거나 그 사용할 시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.
- ⑤ 전도금은 집행 즉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
- ⑥ 전도금은 매월 말 현재 잔액을 정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 하게 정리하지 못할 경우회계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. <개정 2005.7.4, 2011.5.25>

제25조(선금급) ①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- ② 원인행위부서는 선급금 지급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정산하고, 선급금을 정리하여야 한다.
- 제26조(개산급) ①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② 원인행위부서는 개산급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정산하고, 개산급을 정리하여야 한다.

제 4 장 세무회계

- 제27조(업무처리의 적용원칙) 세무업무는 법령, 통칙, 예규, 훈령, 사규 및 지침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- 제28조(세무업무의 인계·인수) 세무업무와 관련된 직원의 사무인계·인수시에는 반드시 세무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·인수하여야 한다.
- 제29조(조정계산서 작성) 본사 세무담당부서장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, 조정계산서 작성 착수 전에 자체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.
- 제30조(사업자등록) ①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사업자등록 및 정정은 사업장별로 한다.
 - ② 제1항의 사업장은 독립회계단위지사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③ 독립회계단위지사장은 관할 사업자등록 및 정정사항을 지체 없이 본사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31조(세금계산서 교부 및 징구) 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부서는 동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징구하여야 한다. ② <삭제 2012.10.5>
- 제32조(계산서 등의 교부 및 징구)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 또는 징구하여야 한다.
- 제33조(세금계산서 등 처리) 매출관련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을 교부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회계처리 및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세무담당부서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며, 매입관련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받은 부서장은 지체 없이 회계처리를 완료하여 회계 담당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5.25>
- 제34조(소득세 원천징수) 개인에게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(지급의제 포함)에는 동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.
- 제35조(법인세 원천장수) 법인에게 법인세법상 원천장수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동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장수하여야 한다.
- 제36조(지방소득세 소득분 원천징수) 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부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.
 - <개정 2011.5.25. 2018.6.29>
 - ② 제1항의 지방소득세 소득분 원천징수라 함은 지방세법이 정한 특별징수를 말한다.

<개정 2018.6.29>

- 제37조(원천제세 납부)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국세는 사업장관할 세무서에, 지방소득세소득분은 지방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5.25>
- 제38조(인지세 납부) 인지세법상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부서장은 동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제39조(취득세) 지방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취득재산에 대한 원인행위부서는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.
- 제40조(등록세) 등기 또는 등록업무담당부서장이 소관업무에 관련된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등록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한다.
- **제41조(재산세)** 자산담당부서장이 재산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과세대상,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.
- 제42조(주민세) ① <개정 2011.5.25, 삭제 2022.9.23>
 - ② 주민세 사업소분은 자산담당부서장이 지방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5.25., 2022.9.23>
- 제43조(지방소득세) ①지방소득세법인세분은 세무담당부서장이 지방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5.25>
 - ②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급여담당부서장이 지방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5.25>
- 제44조(가산세 등의 범위) 이 규정에서 가산세 등이라 함은 세법에 정한 가산세(본세추징금 포함), 가산금, 벌과금 및 공제 누락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말한다. 다만, 법인세추납액으로 처리 하는 가산세 등은 제외한다.
- 제45조(정리방법) 심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된 가산세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리한다.
 - 1. 납세의무자로부터 징구
 - 2. 계약자로부터 회수
 - 3. 직원으로부터 변상
 - 4. 회사부담처리
- 제46조(정리책임부서 및 임무) ① 가산세 등의 정리책임부서는 가산세 등의 발생원인 행위부서가 된다.
 - ② 정리책임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가산세 등의 발생원인규명 및 방지대책수립
 - 2. 심사청구에 필요한 증빙자료수집 및 제출
 - 3. 가산세 등의 정리 및 관련된 사후관리
- 제47조(장수 및 회수) ① 원천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원천제세는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.
 - ② 계약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가산세 등은 계약자로부터 회수한다.

- **제48조(직원변상)**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가산세 등은 발생원인 행위자가 변상하여야한다.
 - ② 제1항의 변상액이 월급여액의 2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변상하게 할 수 있다.
- 제49조(회사부담처리) ① 심사청구에 의한 환급, 제47조의 징수 및 회수와 제48조의 직원변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산세 등은 회사의 부담으로 처리한다.
 -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결정권자의 결재를 받아 회사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.
 - 1. 조세심판원 심판청구, 국세청, 행정안전부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, 행정소송에서 기각 결정된 가산세 등 <개정 2010.4.7, 2011.5.25>
 - 2. 납세의무자 또는 계약자로부터 정수 또는 회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의 회수불능금액
 - 3. 가산세 등의 고지 전에 변상하여야 할 직원이 퇴직할 경우의 당해 퇴직직원의 변상부담액 중 회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
 - 4. 기타 회사의 부담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가산세 등

제 5 장 자산회계

- 제50조(자산재평가) 자산의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, 기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제51조(부외자산의 범위) ① 부외자산은 자산으로 관리할 가치가 있는 자산 중 재무상태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자산을 말한다.
 - ②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해 있는 임차자산, 담보자산, 국유재산 등은 부외자산에 준하여 관리한다.
- 제52조(부외자산의 자산등재가액) ① 부외자산을 자산에 등재하는 경우의 등재가액은 취득가액 또는 평가액으로 한다. 다만, 등재할 가액을 적절히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비망가액으로 한다. 이 경우 등 재가액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비망가액은 1,000원으로 한다.
 - ②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서 제각된 자산으로서 잔존가액을 배분할 수 없는 자산은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자산에 등재할 수 있다. 이 경우 평가익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.
 - ③ 기증·증여 등에 의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적절한 평가를 하여 자산으로 등재할 수 있다.
 - ④ 수익적 지출에 의하여 비용 처리된 자산으로서 사용 후 반납된 것은 그 상태를 감안하여 재생 후 재입고 시키거나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활용의 가치가 있는 것은 재생 후 그 상태에 따른 평가액을 입고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액에서 재생비용을 공제한 가액을 평가익으로 하고 이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.
- 제53조(정수책정) ① 차량운반구, 공구와 기구, 비품 등 주요 물품에 대하여 정수를 책정·운용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책정방법은 정수관리부서장이 정한다.
- 제54조(유가증권의 관리) ① 유가증권은 금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.

-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 등은 유가증권에 준하여 지출원인행위부서에서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55조(재고자산의 관리 등) ① 재고자산은 적정수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.
 - ② 재고자산의 출납은 입・출고전표에 의하여야 한다.
 - ③ 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에 관한 기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기록방법에 의한다.
- 제56조(재물조사) ①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산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, 재물조사결과 과부족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경우 원인이 불분명한 때에는 그 차액을 영업외손익이나 기타 적절한 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원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의 과부족을 수정할 때의 적용단가는 당해 수정을 행한 시점부터 최근의 동종·동질의 물자 출고단가에 의한다.
- 제57조(건설 중인 자산) ① 유형자산 등의 취득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정리하고 그 취득을 완료할 때에는 당해 계정에 대체한다. <개정 2011.5.25>
 - ② 제1항의 건설 중인 자산에는 건설기간 중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을 포함한다.
- 제58조(유·무형자산의 처분결정) 유·무형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유·무형자산에 대하여 불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5.25>
- 제59조(권리보존) 유·무형자산은 그 권리보존을 위하여 당해 자산의 관리담당이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등기, 인증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5.25>
- 제60조(보험의 가입)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 다만, 토지 또는 사장이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유형자산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제61조(감가상각의 방법) ① 유·무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한다. <개정 2011.5.25> ② 유·무형자산을 처분 또는 불용결정시 장부가액의 결정은 처분 또는 불용 해당일 직전월 까지의 가액으로 한다. <개정 2011.5.25>
- 제62조(감가상각 실시시기) 감가상각은 매분기단위로 실시한다. <개정 2018.6.29>
- 제63조(잔존가액) ① 유·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. <개정 2011.5.25>
 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유·무형자산에 대하여는 1,000원을 당해 유·무형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5.25>
- **제64조(법인세법 등의 준용)** 유형자산의 내용연수, 상각률 기타 감가상각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 세법 및 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<개정 2010.4.7, 2011.5.25, 2018.6.29>

제 6 장 부채 및 자본회계

제65조(확정급여부채) 확정급여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에 예측퇴직급여채무의 개념을 채택하여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11.5.25, 2018.6.29>

제 7 장 수익 및 비용회계

제66조(수익적 지출 및 자본적 지출) ①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.

- 1. 유형자산의 단순한 이전을 위한 지출 <개정 2018.6.29>
- 2. 기존 유형자산의 도장공사를 위한 지출 <개정 2018.6.29>
- 3. 경상적이고 주기적인 수선을 위한 지출
- 4. 기타 조업 가능한 상태의 유지를 위한 지출
- ②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한다.
- 1. 증설·확장·개량으로 인하여 유형자산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경우의 지출 <개정 2018.6.29>
- 2. 기존 유형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 <개정 2018.6.29>
- 3. 유형자산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기존 유형자산을 철거하기 위한 지출 <개정 2018.6.29>
- 4. 건물·기계설비 등이 감손되어 당해 자산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자산의 복구를 위한 지출
- 5. 기타 전 각 호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
- ③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 및 통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8 장 본지점회계

- 제67조(내부거래의 기장) 회계단위 상호간의 거래를 내부거래라 하며 내부거래에서는 내부대차 관계가 발생여 본사원장에는 지사계정을, 지사원장에는 본사계정을 각각 설정하여 모든 내부대차 관계를 기입한다.
- 제68조(이체전표의 작성) ① 본점과 지점상호간의 거래는 본지점계정으로 정리한다.
 - ② 지점간 거래는 반드시 본사 회계단위를 경유하며, 지점간 거래의 본사 처리부서는 해당 거래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로 한다. 단, 결산을 위하여 본사 회계담당부서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에는 본사 회계단위 경유를 생략할 수 있다. <개정 2005.7.4, 2022.9.23>
 - ③ 본지점거래는 매월 말 현재 전액 정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69조(자산부채의 거래) 채권, 채무 및 기타의 자산, 부채를 타 회계단위로 이체할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이체하여야 한다. 다만, 감가상각을 요하는 자산은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이체한다.
- 제70조(손익거래) 본지점간 손익거래는 하지 않는다. 다만, 타지사로 이체할 경우에는 장부에 계상된 원가로써 이체하고 내부손익을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 9 장 결산

제71조 ~ 제77조 <삭제. 2018.6.29>

- 제78조(결산) 결산은 회계기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79조(결산시행) ① 결산은 각 회계단위별로 실시하고 본점의 총괄회계단위에서 총괄하여 결산 보고서를 작성한다.
 - ② 회계단위 간의 거래의 내부이익을 공제하고 미달거래를 정리하여 결산을 심시한다.
 - ③ 결산은 기말결산, 반기결산, 분기결산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월차결산을 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1.5.25>
- 제80조(결산지침) 본사의 회계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산지침을 작성하여 결산일 10일 전까지 각 회계단위에 시달할 수 있다. <개정 2011.5.25>
 - 1. 회계단위별 결산일정
 - 2. 결산에 관한 기준과 원칙 및 제 규정
 - 3. 결산정리에 관련되는 사항
 - 4. 기타 결산에 필요한 사항
- 제81조(결산정리) ① 결산에 앞서 자산·부채 및 자본과 손익에 관련되는 항목 중 결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.
 - ② 결산시에는 연도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결산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.
- 제82조(기말결산) 본사의 회계담당부서장은 회계기준에 의거 매 결산기말 현재의 재무제표와 부속 명세서를 작성하여 상법에 정한 기일 내에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1.5.25, 2018.6.29>

제83조(결산서의 숭인 등) 결산서의 숭인·비치·공시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은 상법 등 관계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<개정 2018.6.29>

제 10 장 해외사무소의 회계

- 제84조(적용범위) 해외사무소의 회계에 관하여는 본 장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른 장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제85조(해외사무소의 회계처리) 해외사무소의 자금영달 및 정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.
 - 1. 본사 주관부서장은 매 분기별로 소요자금을 영달하고 영달시 회계처리과목은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시 영달할 수 있다.
 - 2. 전도자금은 미화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며, 미화 이외의 현지 화폐지불액에 대하여는 평균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미화를 정산액으로 한다.
 - 3. 평균환율은 계산단위기간을 1월 또는 1분기로 하되 매 송금시 마다 환전한 현지화폐액의 월 또는 분기 간 총액을 전월 또는 전분기 잔액과 합하여 미화 합계액으로 나눈 수치로 한다.

제 11 장 기타

제86조(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·관리) ① 회사는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

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'공공재정환수법') 제2조(정의)제5호의 공공재정지급금에 관하여「공공재정환수법」제2조제6호의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여 제재처분(지급중단, 환수, 가산금 및 체납처분, 제재부가금, 명단 공표 등)을 한 경우, 같은 법 제25조(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·관리)의기록·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. <신설 2022.9.23>

② 제1항의 제재부가금 부과 등에 대한 기록·관리는 해당 공공재정지급금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. <신설 2022.9.23>

부 칙

이 규정은 1993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회계규정시행세칙은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제5조 제3항에 의한 회계관계직원 직무 연속수행금지의 조항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제2조, 제6조, 제64조, 제65조, 제82조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조항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.
- ③ 제13조 1호의 라항, 제36조, 제37조, 제42조, 제43조의 경우 관련 세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8.6.29>

이 규정은 201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8.8.23>

이 규정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0.6. 2>

이 규정은 2020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2.9.23>

이 규정은 2022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.